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 기준일 | 2013년 8월 22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8월 27일 |
|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 수익증권 10조화 |
| [모집(매출) 총액] |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
| 나.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
|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 |
|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
|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4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4
5. 인수에 관한 사항	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4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6
4. 집합투자업자	6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9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1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1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2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5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0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6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0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33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59
1. 재무정보	5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백만)	6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63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6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6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68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69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70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70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72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72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75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75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8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79
[붙임] 용어풀이	80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76032)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 -2	종류 C -e	종류 직판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6033	76034	98678	98679	98680	98681	93509	76035	8414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 모자형

* 종류형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과 그 모두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원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76032)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 -2	종류 C -e	종류 직판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6033	76034	98678	98679	98680	98681	93509	76035	8414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07.11.14	최초설정
2008.05.13	종류 직판F 추가
2008.09.24	A클래스 환매수수료 인하 (변경후: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2009.04.29	법에 따라 명칭 변경(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주식형자투자신탁1호=>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모펀드 투자에 대한 최저투자한도 일부 변경
2009.07.15	모펀드 추가(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2010.02.16	이익배분관련소득세법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삭제, 해외펀드 비과세혜택 종료, 해외펀드 상계과세 관련 내용 반영, 자산운용보고서시행령92조 개정사항반영, 투자중개업자의 선정 기준 변경,해외집합투자업자 변경(영국->미국),업종대표정의보완설명
2010.03.16	펀드매입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2010.04.12	모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편입 모투자신탁 내용 수정 (삭제: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0.05.03	판매보수인하 (1.7% -> 1.5%(종류 C))
2011.01.10	종류 명칭 변경 (종류 C → 종류 C1) 판매회사보수율 체감식으로 변경 종류 C-e 판매보수인하(1.45% -> 2011년01월10일~2012년01월09일: 1.36%, 2012년01월10일~2013년01월09일: 1.28%, 2013년01월10일~2014년 01월 09일: 1.19% 2014년 01월 10일 이후: 1.10%),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소규모펀드 해지 및 수시공시 관련사항)
2011.04.19	집합투자업자 주소변경,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소규모펀드 해지 및 수시공시 관련사항), 모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확대
2013.02.18	모투자신탁(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2013.07.01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역 변경(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Li Cong → 김병하)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번지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우. 100-210)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해당 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설립일	2003년 12월 17일
회사주소	Level 15, Three Pacific Place, 1 Queen's Road East, Hong Kong 전화번호:(852)-2295-1500 팩스:(852)-2295-0698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설립일	2008년 4월 7일
회사주소	1 Bryant Park, 39th Fl. New York, NY 10036 전화번호: (1)-212-626-6582 팩스: (1)-212-626-6596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13.06.30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안선영	1976	본부장	15개	29,365 억	(99년~99년) 한국채권연구원 (99년~08년) 미래에셋증권 AP Research Center (08년~13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 (13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개수: 해당사항없음 규모: 해당사항없음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투자전략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13.06.30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송진용	1975	본부장	44개	55,228억	(03년~06년) 대신증권/대신투신운용 (0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개수: 해당사항없음 규모: 해당사항없음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2007.11.14 ~ 2010.02.15	송진용
2010.02.16 ~ 현재	목대균
2011.04.18~현재	안선영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명 칭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2009.07.23 ~ 2010.02.15	이현복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2010.02.16 ~ 현재	송진용

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 명	세부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김 영 환	과거경력 : 미래에셋자산운용 / 주식운용본부 미래에셋자산운용(영국) /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 Head of Investment, Portfolio Manager 현재지위 :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 명	세부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Jose Morales	과거경력 : Mitchell Hutchins Asset Management HSBC Asset Management Ltd EMEA Emerging Markets West LB Mellon Asset Management Emerging European Equities Pictet Asset Management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K) Head of Emerging Markets, Deputy CIO 현재지위 :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명	세부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김병하	과거경력: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Analyst) Mirae Asset Investment Management Co. (Portfolio Manager) Mirae Asse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ortfolio Manager & Strategist) 현재지위: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K) (Co-CIO)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명	세부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Rahul Chadha	과거경력: Aviva Life Insurance (Senior Research Analyst) Standard Chartered Mutual Fund (Senior Equity Analyst) 현재지위: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K) (Co-CIO)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종류 A	종류 C-2	종류 C-e	종류 직판 F
가입자격 ^{주1)}		제한없음	50 억 이상	온라인 가입자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		2007.11.14	미설정	2007.11.14	2008.06.03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	-	-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보수	운용보수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판매보수	연 0.86%	연 0.56%	보수표참조	연 0%
	신탁보수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사무관리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종류 C-e	지급비율(연간,%)
판매회사 보수	2012년 1월 10일~2013년 1월 9일: 순자산총액의 연 1.28% 2013년 1월 10일~2014년 1월 9일: 순자산총액의 연 1.19% 2014년 1월 10일 이후: 순자산총액의 연 1.10%

구분	지급비율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가입자격 주1)		제한없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최초설정일		2007.11.14	2007.11.14	2007.11.14	2007.11.14	2011.11.14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보수	운용보수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판매보수	연 1.5%	연 1.4%	연 1.3%	연 1.2%	연 1.1%
	신탁보수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사무관리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주1)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신탁 자신탁	아시아 업종대 표 증권모(주식)	동유럽 업종대 표 증권모(주식)	인디아 업종대 표 증권모(주식)	인디아 업종대 표 증권모 2 호(주 식)	차이나 업종대 표 증권모 2 호(주 식)	브라질 업종대 표 증권모(주식)	러시아 업종대 표 증권모(주식)	라틴아 메리카 업종대 표 증권모(주식)	중동아 프리카 업종대 표 증권모(주식)	KOREA 증권모(주식)	ASEAN 업종대 표 증권모(주식)	파로스 증권모(채권)	월드파 로스 증권모(채권)
Eastern 유 라시아업종 대표 증권자 1 호(주식)	20% 이상	20% 이상											
	90% 이상												
EasternEUR ICs 업종대 표 증권자 1 호(주식)		20% 이상	20% 이상										
			90% 이상										
동유럽업종 대표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차이나브라 질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20% 이상	20% 이상							
					90% 이상								
BRICs 업종 대표 증권자 1 호(주식)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90% 이상										
BRICs 업종 대표 장기주택마 련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라틴아메리 카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동유럽중동 아프리카 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 식)		20% 이상							20% 이상				
		*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주식형 모를 합쳐서 90% 이상											
러시아업종 대표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브라질업종 대표						90% 이상							

증권자 1 호(주식)													
ASEAN 업종 대표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브라질러시아 업종대표 증권자 1 호(주식)					20% 이상	20% 이상							
					90% 이상								
노블레스싱 글로벌이머징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부모님사랑 글로벌이머징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10% 이하	
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 증권자 1 호(주식)	90% 이상												
부모님사랑 글로벌이머징 증권자 1 호(주식 혼합)	60% 이하											60% 이하	
	90% 이상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1)}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합하여 15% 이상	이 투자신탁은 중국, 홍콩 및 인도 지역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대표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②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홍콩 지역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대표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③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인도 지역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대표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④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5% 이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대표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⑤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	15% 이상	이 투자신탁은 러시아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 중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대표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

	탁(주식)		합투자기구입니다.
⑥	단기대출/금융 기관 예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주1)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⑥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⑥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주2)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최저 투자한도와 (전월말 비교지수내 해당 지역의 시가총액 비중-2%) 중 작은 값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에 합하여 15% 이상,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각 15% 이상, 전체 합하여 9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③ 비교지수 : MSCI BRIC Index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BRICs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BRIC Index는 BRICs 지역의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

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비교지수 및 전월말 비교지수 내 국가별 비중은 미래에셋자산운용(주) 홈페이지(investments.miraeasset.com)의 펀드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관리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펀드는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한편, 해외에 투자하게 됨에 따라 노출되게 되는 환위험에 대해서는 각 모펀드에서 환헤지 수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모펀드의 환위험 관리전략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환위험관리>

구 분	세부내용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중국 부분 :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 인도 부분 :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환헤지 방법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을 사용합니다.	
목표 헤지비용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중국 부분 :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인도 부분 :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니저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니저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니저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	

	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거래를 수행하게 되는데, 선물환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

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국가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 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금송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 (DR)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 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본래 기업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 :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선진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타 변수 :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지역)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매매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다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중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이해상충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 3 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여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원본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아래 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한편, 아래 위험등급 분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 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	------	----------

1	매우높은위험	-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20% 이상인 것)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높은 위험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20% 이하이거나,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조건 하에서 원금보존 추구형 투자전략을 갖는 것)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중간 위험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0% 수준으로서 원금보존 추구형 투자전략을 갖는 것) - 장내파생상품만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실물(오피스빌딩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낮은 위험	-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매우낮은위험	-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기구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별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위험자산: 주식, 투기등급채권(BB+이하), 상품(Commodity) 등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 최대손실가능비율이라 함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가능비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구 분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종류 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있음

종류 C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없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없음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없음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없음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없음
종류 C-2	50억원 이상 가입하는 투자자	없음
종류 C-e	온라인 가입자	없음
종류 직판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8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

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증권의 부분환매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빈번한 환매를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빈번하게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는 계속 투자 중인 기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환매수수료 부과 후에 실제로 수령하시는 금액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예상하신 금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내 용
종류 A	30일미만 : 이익금의 10%
종류 C1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종류 C2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종류 C3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종류 C4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종류 C5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종류 C-2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종류 C-e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종류 직판F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다만, 이익금은 “투자원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채투자된 지분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됩니다.

※ 환매수수료의 면제

1. 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전부가 환매되는 경우
2.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

3.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자

다. 전환

①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가)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나)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다)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라)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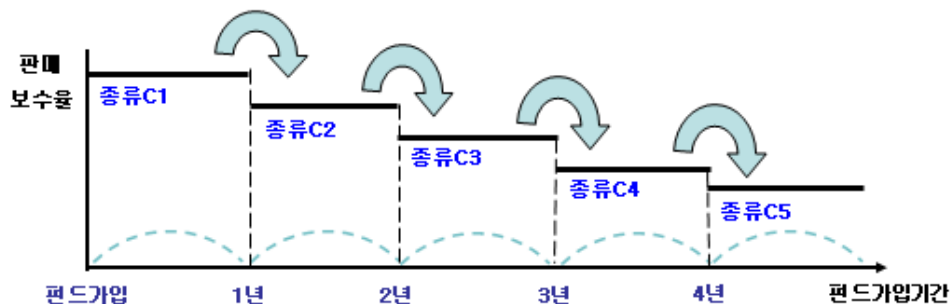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수익증권간 전환 요약도>



※ 2011년 01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종류별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산정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매수한 일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아래 사항들은 모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일 전날의 채무상태 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간 판매보수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
C1	제한없음	—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C-2	50억원 이상 가입하는 투자자	—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C-e	온라인 가입자	—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직판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중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지급비율(연간,%)
----	------------

(클래스)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총 보수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A	0.9	0.86	0.06	0.03	0.09	1.94	1.94
C1	0.9	1.5	0.06	0.03	0.09	2.58	2.58
C2	0.9	1.4	0.06	0.03	0.09	2.48	2.48
C3	0.9	1.3	0.06	0.03	0.09	2.38	2.38
C4	0.9	1.2	0.06	0.03	0.09	2.28	2.28
C5	0.9	1.1	0.06	0.03	0.09	2.18	2.18
C-2	0.9	0.56	0.06	0.03	0.09	1.64	1.64
C-e	0.9	보수표참조	0.06	0.03	0.09	보수표 참조	보수표참조
직환F	0.9	0	0.06	0.03	0.09	1.08	1.08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종류 C-e	지급비율(연간,%)
판매회사 보수	2012년 1월 10일~2013년 1월 9일: 순자산총액의 연 1.28% 2013년 1월 10일~2014년 1월 9일: 순자산총액의 연 1.19% 2014년 1월 10일 이후: 순자산총액의 연 1.10%
총보수 비용	2012년 1월 10일~2013년 1월 9일: 순자산총액의 연 2.36% 2013년 1월 10일~2014년 1월 9일: 순자산총액의 연 2.27% 2014년 1월 10일 이후: 순자산총액의 연 2.18%
총 보수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2012년 1월 10일~2013년 1월 9일: 순자산총액의 연 2.36% 2013년 1월 10일~2014년 1월 9일: 순자산총액의 연 2.27% 2014년 1월 10일 이후: 순자산총액의 연 2.18%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들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과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734,402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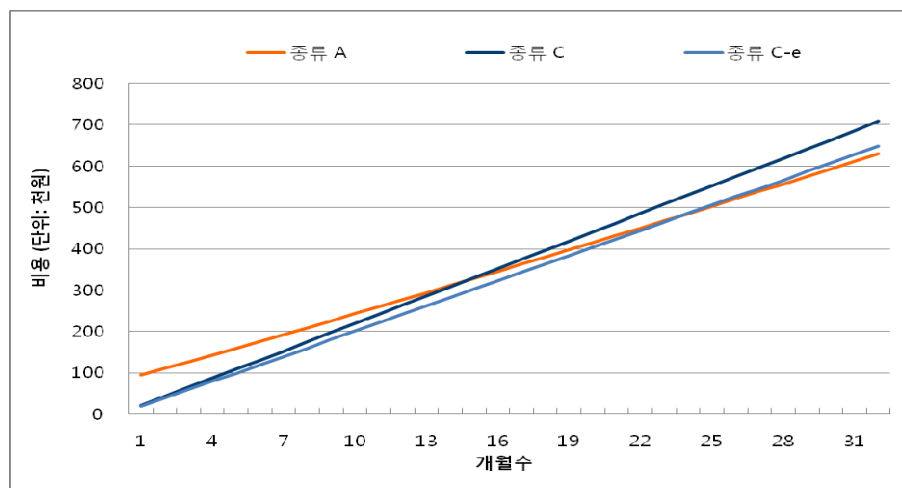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수익증권 종류	구 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5	689	1,128	2,34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75	689	1,128	2,344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4	787	1,290	2,64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64	787	1,290	2,642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8	524	904	1,9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8	524	904	1,969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2	721	1,217	2,57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42	721	1,217	2,579
종류 직판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1	346	601	1,3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1	346	601	1,329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해외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 해외 투자자산의 안전한 보관등을 위해 이용하게되는 자산보관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등)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펀드명	종류	수수료				보수 (%)				
		선취	후취	전환	환매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총보수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B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9	0.86	0.06	0.03	1.85
	C1	-	-	-	90 일 미만 70%	0.9	1.5	0.06	0.03	2.49
	C2	-	-	-	90 일 미만 70%	0.9	1.4	0.06	0.03	2.39
	C3	-	-	-	90 일 미만 70%	0.9	1.3	0.06	0.03	2.29
	C4	-	-	-	90 일 미만 70%	0.9	1.2	0.06	0.03	2.19
	C5	-	-	-	90 일 미만 70%	0.9	1.1	0.06	0.03	2.09
	C-e	-	-	-	90 일 미만 70%	아래 기간별로 상이				
		12.01.10 ~ 13.01.09				0.9	1.28	0.06	0.03	2.27
		13.01.10 ~ 14.01.09				0.9	1.19	0.06	0.03	2.18
		14.01.10 이후				0.9	1.1	0.06	0.03	2.09
	C-2	-	-	-	90 일 미만 70%	0.9	0.56	0.06	0.03	1.55
	직판 F	-	-	-	90 일 미만 70%	0.9	0	0.06	0.03	0.99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C-i	-	-	-	90 일 미만 70%	0.9	0.03	0.06	0.03	1.02
라틴아메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동유럽중동아프리카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SEAN 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9	0.68	0.06	0.03	1.67
	C1	-	-	-	90 일 미만 70%	0.9	1.36	0.06	0.03	2.35
	C2	-	-	-	90 일 미만 70%	0.9	1.3	0.06	0.03	2.29
	C3	-	-	-	90 일 미만 70%	0.9	1.23	0.06	0.03	2.22
	C4	-	-	-	90 일 미만 70%	0.9	1.16	0.06	0.03	2.15
	C5	-	-	-	90 일 미만 70%	0.9	1.1	0.06	0.03	2.09
	C-e	-	-	-	90 일 미만 70%	0.9	1.1	0.06	0.03	2.09
	C-2	-	-	-	90 일 미만 70%	0.9	0.56	0.06	0.03	1.55
	직판 F	-	-	-	90 일 미만 70%	0.9	0	0.06	0.03	0.99
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9	0.86	0.06	0.03	1.85
	C1	-	-	-	90 일 미만 70%	0.9	1.5	0.06	0.03	2.49
	C2	-	-	-	90 일 미만 70%	0.9	1.37	0.06	0.03	2.36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C3	-	-	-	90 일 미만 70%	0.9	1.23	0.06	0.03	2.22
	C4	-	-	-	90 일 미만 70%	0.9	1.1	0.06	0.03	2.09
	C-e	-	-	-	90 일 미만 70%	0.9	1.35	0.06	0.03	2.34
	C-e2	-	-	-	90 일 미만 70%	0.9	1.23	0.06	0.03	2.22
	C-e3	-	-	-	90 일 미만 70%	0.9	1.12	0.06	0.03	2.11
	C-e4	-	-	-	90 일 미만 70%	0.9	1	0.06	0.03	1.99
	Ca	-	-	-	90 일 미만 70%	0.9	0.56	0.06	0.03	1.55
	직판 F	-	-	-	90 일 미만 70%	0.9	-	0.06	0.03	0.99
BRICs 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9	0.68	0.06	0.03	1.67
	C1	-	-	-	90 일 미만 70%	0.9	1.36	0.06	0.03	2.35
	C2	-	-	-	90 일 미만 70%	0.9	1.3	0.06	0.03	2.29
	C3	-	-	-	90 일 미만 70%	0.9	1.23	0.06	0.03	2.22
	C4	-	-	-	90 일 미만 70%	0.9	1.16	0.06	0.03	2.15
	C5	-	-	-	90 일 미만 70%	0.9	1.1	0.06	0.03	2.09
노블레스글로벌로별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부모님사랑글로벌로별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아내사랑글로벌로별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	A	1%	-	-	30 일 미만 10%	0.75	0.76	0.06	0.03	1.6
	C1	-	-	-	90 일 미만 70%	0.75	1.44	0.06	0.03	2.28
	C2	-	-	-	90 일 미만 70%	0.75	1.36	0.06	0.03	2.2
	C3	-	-	-	90 일 미만 70%	0.75	1.27	0.06	0.03	2.11
	C4	-	-	-	90 일 미만 70%	0.75	1.19	0.06	0.03	2.03
	C5	-	-	-	90 일 미만 70%	0.75	1.1	0.06	0.03	1.94
	C-e	-	-	-	90 일 미만 70%	0.75	1.1	0.06	0.03	1.94
부모님사랑글로벌로별이머징증권자 1 호(주식혼합)	A	1%	-	-	30 일 미만 10%	0.7	0.7	0.06	0.03	1.49
	C1	-	-	-	90 일 미만 70%	0.7	1.35	0.06	0.03	2.14
	C2	-	-	-	90 일 미만 70%	0.7	1.26	0.06	0.03	2.05
	C3	1%	-	-	30 일 미만 10%	0.7	1.17	0.06	0.03	1.96
	C4	-	-	-	90 일 미만 70%	0.7	1.09	0.06	0.03	1.88
	C5	-	-	-	90 일 미만 70%	0.7	1	0.06	0.03	1.79
	C-e	-	-	-	90 일 미만 70%	0.7	1	0.06	0.03	1.79

*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 납입금액 기준으로 1회 부과

* 환매수수료는 각 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1회 부과

* 각 펀드별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 홍콩 및 인도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3)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중국, 홍콩 및 인도에 본사를 둔 회사 또는 영업활동을 주로 중국, 홍콩 및 인도에서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업종대표주식	60% 이상	국가별로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⑥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

			에 따라 발행된 것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⑧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⑨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⑩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⑪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⑫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⑬	단기대출 ^{주1)} ,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및 이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 ④ 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⑤ ~ ⑪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주1)}	적용 제외
①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④	동일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⑤	집합투자 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일 부터 1 개 월간

		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⑥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⑦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⑧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⑨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⑩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 ~ ⑦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친디아(중국, 홍콩, 인도)지역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업종대표 주식이란?

업종대표 주식이라 함은 주식중 국가별로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 GICS 분류 기준이란?

GICS란 S&P사와 MSCI사가 1999년 개발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으로서 10개 sector, 24개 industry group, 68개 industry, 154개 sub-industr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

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④ 비교지수: MSCI Customized China + India Index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친디아(중국, 홍콩, 인도)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Customized China + India Index 는 중국, 홍콩 및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12년, 조 US\$)	8.227			인구 (13년 추정, 만 명)	134,958
GDP 성장률 추이 (YoY, %)	10년	11년	12년	수출 (12년, 조 US\$)	2.05
	10.4	9.3	7.8	수입 (12년, 조 US\$)	1.817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12년, 조 US\$)	4.761			인구 (13년 추정, 만 명)	122,080
GDP 성장률 추이 (YoY, %)	10년	11년	12년	수출 (12년, 십억 US\$)	309.1
	11.2	7.7	6.5	수입 (12년, 십억 US\$)	500.3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가공, 철, 운수장비, 시멘트, 소프트웨어 등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 중국 부분 :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인도 부분 :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니저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2.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업종대표 주식이라 함은 주식중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3)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브라질 업종대표주식	60% 이상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으로서 브라질에 본사를 둔 회사 또는 영업활동을 주로 브라질에서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

			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자산 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어 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⑥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⑧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⑨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⑩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⑪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⑫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⑬	단기대출 ^{주1)} ,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및 이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④ 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⑤ ~ ⑪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주1)	적용 제외
①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③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④	동일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⑤	집합투자 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 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⑥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⑦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⑨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⑩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 ~ ⑦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브라질 지역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업종대표 주식이란?

업종대표 주식이라 함은 주식중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 GICS 분류 기준이란?

GICS란 S&P사와 MSCI사가 1999년 개발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으로서 10개 sector, 24개 industry group, 68개 industry, 154개 sub-industr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④ 비교지수: MSCI Brazil Index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브라질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Brazil Index 는 브라질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브라질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12년, 십억 US\$)	2,362			인구 (13년 추정, 만 명)	20,100
GDP 성장률 추이 (YoY, %)	10년	11년	12년	수출 (12년, 십억 US\$)	242
	7.5%	2.7%	1.3%	수입 (12년, 십억 US\$)	238.8
주요산업	섬유공업, 신발제조, 화학, 철강업 등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니저는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3.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러시아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3)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러시아 업종대표주식	60% 이상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

			으로서 러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 또는 영업활동을 주로 러시아에서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②	채 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어 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 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⑥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⑧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⑨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⑩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⑪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⑫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⑬	단기대출 ^{주1)} ,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및 이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④ 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⑤ ~ ⑪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주1)}	적용 제외
①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	

		런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④	동일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⑤	집합투자 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 월간
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⑥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⑦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위험평가액 한도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현금, 금융 기관에의 예치, 단기 대출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증거금 제외)의 합계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⑨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⑩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⑪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 ~ ⑧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러시아 지역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업종대표 주식이란?

업종대표 주식이라 함은 주식중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 GICS 분류 기준이란?

GICS란 S&P사와 MSCI사가 1999년 개발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으로서 10개 sector, 24개 industry group, 68개 industry, 154개 sub-industr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④ 비교지수: MSCI Russia Index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러시아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Russia Index 는 러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러시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12년, 십억 US\$)	2,504			인구 (13년 추정, 만 명)	14,250
GDP 성장률 추이	10년	11년	12년	수출 (12년, 십억 US\$)	530.7
(YoY, %)	4.5%	4.3%	3.4%	수입 (12년, 십억 US\$)	335.4

주요산업

자원개발, 기계 부품, 방위산업, 조선업 등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4.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홍콩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용 주3)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중국 및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 또는 영업활동을 주로 중국 및 홍콩에서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업종대표주식	60% 이상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자산 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⑥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⑧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⑨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⑩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⑪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⑫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⑬	단기대출 ^{주1)} ,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및 이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④ 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⑤ ~ ⑪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주1)	적용 제외
①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함)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④	동일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⑤	집합투자 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 개 월간
⑥	동일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⑦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⑧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⑨	파생상품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	

	투자	외과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⑩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⑪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 ~ ⑦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중국 및 홍콩 지역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업종대표 주식이란?

업종대표 주식이라 함은 주식중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 GICS 분류 기준이란?

GICS란 S&P사와 MSCI사가 1999년 개발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으로서 10개 sector, 24개 industry group, 68개 industry, 154개 sub-industr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④ 비교지수: MSCI China Index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중국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상가지수는 중국 및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12년, 조 US\$)	8.227			인구 (13년 추정, 만 명)	134,958
GDP 성장률 추이 (YoY, %)	10년	11년	12년	수출 (12년, 조 US\$)	2.05
	10.4	9.3	7.8	수입 (12년, 조 US\$)	1.817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5.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인도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

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3)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인도에 본사를 둔 회사 또는 영업활동을 주로 인도에서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업종대표주식	60% 이상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자산 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⑥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⑧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⑨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⑩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⑪	장외파생상품		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⑫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⑬	단기대출 ^{주1)} ,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④ 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⑤ ~ ⑪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주1)}	적용 제외
①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④	동일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⑤	집합투자 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	동일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⑥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⑦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⑨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⑩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 ~ ⑦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인도 지역의 업종대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업종대표 주식이란?

업종대표 주식이라 함은 주식중 각 product 또는 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또는 GICS분류에 따른 산업별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편입일 기준으로 1내지 2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 GICS 분류 기준이란?

GICS란 S&P사와 MSCI사가 1999년 개발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으로서 2008.12.31일 현재 10개 sector, 24개 industry group, 68개 industry, 154개 sub-industr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④ 비교지수: MSCI India Index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인도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상가지수는 인도의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12년, 조 US\$)	4.761			인구 (13년 추정, 만 명)	122,080
GDP 성장률 추이 (YoY, %)	10년	11년	12년	수출 (12년, 십억 US\$)	309.1
	11.2	7.7	6.5	수입 (12년, 십억 US\$)	500.3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가공, 철, 운수장비, 시멘트, 소프트웨어 등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니저는 일부 혹은 전 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 목	6기 ('13.06.30)	5기 ('12.06.30)	4기 ('11.06.30)
운용자산	194,263	259,575	367,318
증권	193,983	259,245	366,80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79	30	16
기타운용자산	0	300	500
기타자산	4,856	1,814	42,881
자산총계	199,120	261,389	410,19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851	1,786	4,370
부채총계	4,851	1,786	4,370
원본	302,079	411,690	483,849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107,810	-152,086	-78,019
자본총계	194,268	259,603	405,829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6기 ('12.07.01~'13.06.30)	5기 ('11.07.01~'12.06.30)	4기 ('10.07.01~'11.06.30)
운용수익	15,278	-95,493	76,782
이자수익	7	8	17
배당수익	0	0	38,343
매매/평가차익(손)	15,268	-95,506	38,343
기타수익	2	4	78
운용비용	4,506	5,734	8,994
관련회사보수	4,495	5,720	8,976
매매수수료	8	11	14
기타비용	1	2	3
당기순이익	10,771	-101,228	67,787
매매회전율 (%)	113	121	129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 목	6기 ('13.06.30)	5기 ('12.06.30)	4기 ('11.06.30)
운용자산	194,263	259,575	367,318
증권	193,983	259,245	366,802
주식	0	0	0
ETF	0	0	0
채권	0	0	0
매입어음	0	0	0
수익증권	193,983	259,245	366,802
외화유가증권	0	0	0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주가지수매입옵션	0	0	0
ELS	0	0	0
ELW	0	0	0
DLS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부동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79	30	16
예금	279	30	16
외화예금	0	0	0
CD	0	0	0
정기예금	0	0	0
위탁증거금	0	0	0
청약증거금	0	0	0
기타운용자산	0	300	500
콜론	0	300	500
환매조건부채권	0	0	0
기타자산	4,856	1,814	42,881
미수이자	0	0	0
미수배당금	0	0	38,343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4,856	1,813	4,537
선물정산미수입금	0	0	0
선납(선급) 원천세	0	0	0
기타	0	0	0
자산총계	199,120	261,389	410,199
운용부채	0	0	0
매도유가증권	0	0	0
미지급주식	0	0	0
미지급채권	0	0	0
미지급ETF	0	0	0
주가지수매도옵션	0	0	0
기타부채	4,851	1,786	4,370
미지급보수	938	1,233	1,812
미지급해지금	3,910	549	2,553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미지급원천세	0	0	0
기타부채	2	3	4
부채총계	4,851	1,786	4,370
원본	302,079	411,690	483,849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107,810	-152,086	-78,019
당기순이익	0	0	0
감자차익/차손	0	0	0
자본총계	194,268	259,603	405,829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 목	6기 (‘12.07.01~‘13.06.30)	5기 (‘11.07.01~‘12.06.30)	4기 (‘10.07.01~‘11.06.30)
운용수익	15,278	-95,493	76,782
투자수익	9	12	38,438
이자수익	7	8	17
배당수익	0	0	38,343
기타수익	2	4	78
매매이익	20,785	108	52,109
주식매매이익	0	0	0
파생상품매매이익	0	0	0
채권매매이익	0	0	0
외환거래이익	0	0	0
유동자산매매이익	0	0	0
ETF매매이익	0	0	0
수익증권매매이익	20,785	108	52,109
기타매매이익	0	0	0
매매손실	5,516	95,614	13,765
주식매매손실	0	0	0
파생상품매매손실	0	0	0
채권매매손실	0	0	0
외환거래손실	0	0	0
유동자산매매손실	0	0	0
ETF매매손실	0	0	0
수익증권매매손실	5,516	95,614	13,765
기타매매손실	0	0	0
운용비용	4,506	5,734	8,994
위탁보수비	4,495	5,720	8,976
판매보수비	0	0	0
수탁보수비	0	0	0
사무관리보수비	0	0	0
자문보수비	0	0	0
매매수수료	8	11	14
기타비용	1	2	3
당기순이익	10,771	-101,228	67,787
비용	10,023	101,349	22,760
수익	20,795	121	90,548
천좌당 순이익 주1)	29	-222	118

주1) 천좌당 순이익의 단위는 “원”입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백만)

① 종류 A 수익증권 : 제한없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 (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0.07.01~ '11.06.30	507,007.1	372,891.1	83,405.5	70,916.5	249,524.4	210,962.8	340,888.2	232,844.8	0
11.07.01~ '12.06.30	340,888.2	285,085.2	33,355.5	23,270.6	86,513.7	62,278.8	287,730.0	246,077.1	0
12.07.01~ '13.06.30	287,730.0	175,998.9	15,994.6	10,790.8	85,093.6	58,238.2	218,631.0	128,551.5	0

② 종류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0.07.01~ '11.06.30	77,360.6	55,663.1	16,318.6	13,480.3	85,725.7	72,621.9	7,953.5	-3,478.5	0
11.07.01~ '12.06.30	7,953.5	6,466.5	2,535.9	1,758.2	10,090.6	6,839.2	398.8	1,385.5	0
12.07.01~ '13.06.30	398.8	235.5	112.2	73.4	473.0	302.3	38.0	6.7	0

③ 종류 C2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0.07.01~ '11.06.30	0.0	0.0	9,673.2	8,139.4	2,546.2	2,084.0	7,126.9	6,055.4	0
11.07.01~ '12.06.30	7,126.9	5,797.3	11,731.6	7,910.6	9,892.2	6,763.4	8,966.3	6,944.5	0
12.07.01~ '13.06.30	8,966.3	5,303.9	1,544.9	995.4	10,228.0	6,804.9	283.2	-505.5	0

④ 종류 C3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0.07.01~ '11.06.30	0.0	0.0	19,298.7	16,589.0	17,190.0	14,341.4	2,108.6	2,247.6	0
11.07.01~ '12.06.30	2,108.6	1,716.1	8,182.2	5,587.0	3,363.3	2,476.0	6,927.5	4,827.1	0
12.07.01~ '13.06.30	6,927.5	4,104.1	8,622.3	5,734.3	9,671.8	6,481.5	5,878.0	3,356.9	0

⑤ 종류 C4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0.07.01~ '11.06.30	0.0	0.0	48,272.6	41,181.9	10,191.0	8,431.0	38,081.6	32,750.8	0
11.07.01~ '12.06.30	38,081.6	31,006.4	3,206.9	2,361.2	40,243.3	26,351.6	1,045.2	7,016.1	0
12.07.01~ '13.06.30	1,045.2	620.1	6,238.6	4,195.4	2,419.9	1,574.9	4,863.8	3,240.6	0

⑥ 종류 C5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0.07.01~ '11.06.30	0.0	0.0	0.0	0.0	0.0	0.0	0.0	0.0	0
11.07.01~ '12.06.30	1,133.4	1,133.4	22,344.1	21,720.4	2,441.1	2,523.2	21,036.4	20,330.7	0
12.07.01~ '13.06.30	21,036.4	18,837.8	1,233.0	1,186.6	5,409.2	5,393.3	16,860.2	14,631.2	0

⑦ 종류 C-e 수익증권 : 온라인 가입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10.07.01~ '11.06.30	45,515.5	32,955.5	7,220.7	5,954.2	23,189.3	19,084.9	29,546.9	19,824.8	0
11.07.01~ '12.06.30	29,546.9	24,196.6	3,912.9	2,671.0	7,443.5	5,260.7	26,016.3	21,606.9	0
12.07.01~ '13.06.30	26,016.3	15,505.6	1,770.3	1,160.6	7,329.4	4,860.2	20,457.2	11,806.0	0

⑧ 종류 직관F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중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10.07.01~ '11.06.30	31,962.0	24,718.5	27,452.0	24,247.0	1,271.0	1,168.8	58,143.0	47,796.6	0
11.07.01~ '12.06.30	58,143.0	51,561.1	11,058.3	8,231.5	9,631.8	7,149.0	59,569.6	52,643.6	0
12.07.01~ '13.06.30	59,569.6	38,997.3	243.3	179.0	24,745.0	16,767.0	35,067.9	22,409.3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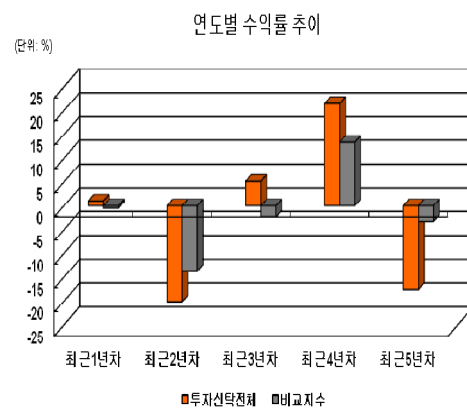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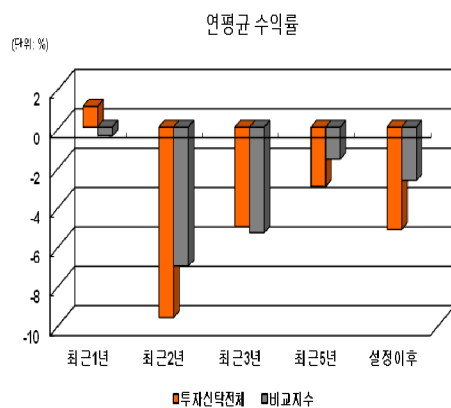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연도 (기간)	최근1년 12.08.01~'13.07.31	최근2년 11.08.01~'13.07.31	최근3년 10.08.01~'13.07.31	최근5년 08.08.01~'13.07.31	설정이후 설정일~'13.07.31
투자신탁전체	1.02	-9.68	-5.08	-3.04	-5.22
종류 A	-0.84	-11.2	-6.63	-4.55	-6.47
종류 C1	-1.47	-11.7	-7.15	-5.1	-6.92
종류 C2	-1.37	-11.63	-7.08	-5.06	-6.89
종류 C3	-1.28	-11.55	-7.01	-5.02	-6.86
종류 C4	-1.18	-11.47	-6.94	-4.98	-6.84
종류 C5	-1.08	-	-	-	-4.65
종류 C-e	-1.2	-11.53	-7	-4.95	-6.79
종류 직판F	0.02	-10.5	-5.92	-3.86	-6.18
비교지수	-0.47	-7.07	-5.38	-1.63	-2.74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연도 기간	최근1년차 12.08.01~'13.07.31	최근2년차 11.08.01~'12.07.31	최근3년차 10.08.01~'11.07.31	최근4년차 09.08.01~'10.07.31	최근5년차 08.08.01~'09.07.31
투자신탁전체	1.02	-20.15	5.12	21.46	-17.6
종류 A	-0.84	-21.71	3.23	19.29	-19.17
종류 C1	-1.47	-22.24	2.58	18.37	-19.87
종류 C2	-1.37	-22.16	2.64	18.37	-19.87
종류 C3	-1.28	-22.08	2.7	18.37	-19.87
종류 C4	-1.18	-22	2.75	18.37	-19.87
종류 C5	-1.08	-9.75	-	-	-
종류 C-e	-1.2	-22.09	2.69	18.6	-19.66
종류 직판F	0.02	-20.99	4.1	20.29	-18.42
비교지수	-0.47	-13.75	-2.35	13.31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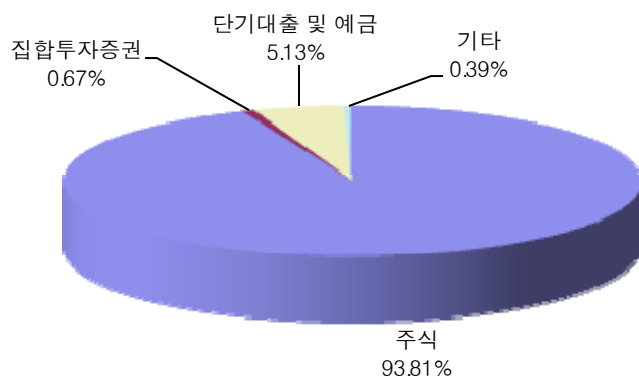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비교지수는 “MSCI BRIC Index”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 및 설정액 유무에 따라 연도별 수익률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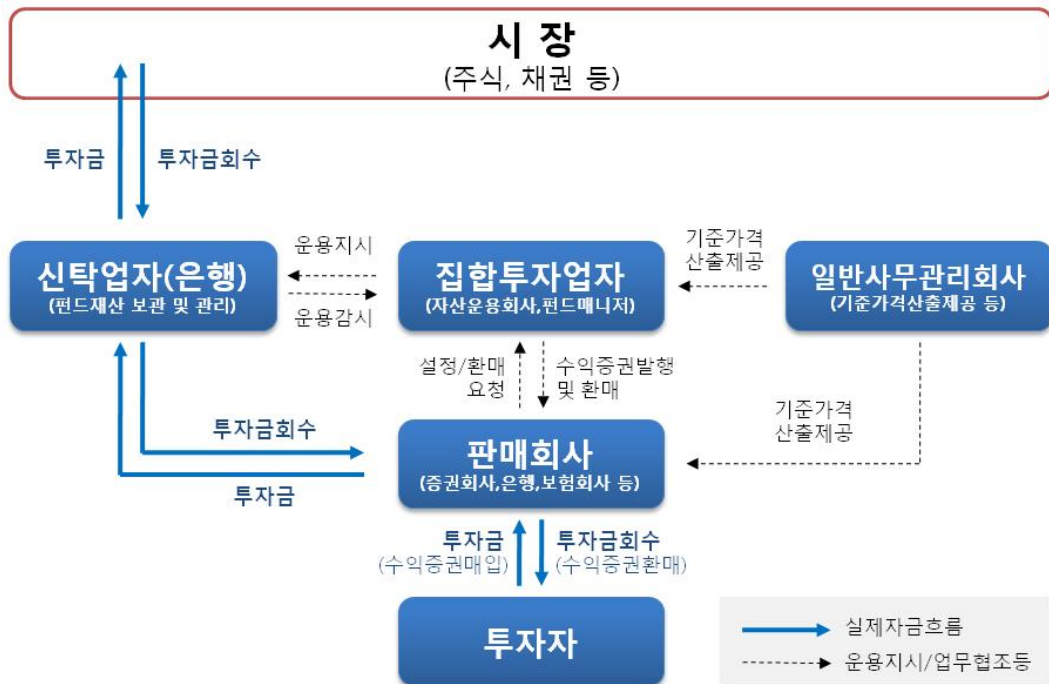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 백만, 2013.06.30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430	0	0	0	0	0	6,327	771	7,527
(한국)	0.00	0.00	0.00	0.22	0.00	0.00	0.00	0.00	0.00	3.18	0.39	
USD	31,745	0	0	0	0	0	0	0	0	1,484	0	33,228
(미국)	15.9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75	0.00	
HKD	75,095	0	0	910	0	0	0	0	0	1,343	0	77,348
(홍콩)	37.71	0.00	0.00	0.46	0.00	0.00	0.00	0.00	0.00	0.67	0.00	
INR	27,849	0	0	0	0	0	0	0	0	266	0	28,115
(인디아)	13.9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3	0.00	
BRL	52,105	0	0	0	0	0	0	0	0	794	0	52,899
(브라질)	26.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40	0.00	
합계	186,795	0	0	1,340	0	0	0	0	0	10,214	771	199,120
	93.81	0.00	0.00	0.67	0.00	0.00	0.00	0.00	0.00	5.13	0.39	



※ 상기 자산구성현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번지 미래에셋 센터빌딩 이스트타워 (우. 100-210) ☎ 1577-1640
홈 페이지 주소	investments.miraeasset.co.kr
자 본 총 계	1조36억원 (2013년 3월 31일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외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현황	-신탁업자 : 국민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일반사무관리회사 :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13.03.31	12.03.31	항 목	12.04.01~13.03.31	11.04.01~12.03.31
현금 및 예치금	1,036	1,318	영업수익	2,467	2,323
유가증권	8,867	8,799	영업비용	1,673	1,516
대출채권	12	15	영업이익	793	806
유형자산	56	70	영업외수익	578	426
기타자산	635	885	영업외비용	325	52
자산총계	10,605	11,086	법인세차감전이익	1,046	1,180
예수부채	32	121	당기순이익	745	894
기타부채	537	1,515			
부채총계	569	1,636			
자본금	679	679			
자본잉여금	2,054	2,054			
기타포괄손익누계	107	-16			
이익잉여금	7,410	6,733			
자본총계	10,036	9,450			

라. 운용자산 규모(2013.06.28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실 물	재간접	특별 자산	투자 일임기 타	총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17,987	4,165	4,642	19,321	46,116	1,158	1,404	3,154	0	733	1,180	20	55,20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해당 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u>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u>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설립일	2003년 12월 17일
회사주소	Level 15, Three Pacific Place, 1 Queen's Road East, Hong Kong 전화번호:(852)-2295-1500 팩스:(852)-2295-0698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u>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u>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설립일	2008년 4월 7일
회사주소	1 Bryant Park, 39th Fl. New York, NY 10036 전화번호:(1)-212-626-6582 팩스: (1)-212-626-6596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

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한국씨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 02- 3455-2114, 1588-5754
홈 페이지 참조	www.citiban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펀드서비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우.150-994) ☎ 02-769-7800
홈 페이지 참조	fs.miraeasset.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홈 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회 사 명	나이스피앤아이(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홈 페이지 참조	www.nicepni.co.kr

회 사 명	KIS채권평가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33
홈 페이지 참조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절차 등을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 간	매매처명	거래구분	자산구분	거래금액
10.07.01~'11.06.30	미래에셋증권	위탁거래	유동자산	188,336,858,162
11.07.01~'12.06.30	미래에셋증권	위탁거래	유동자산	52,055,498,601
12.07.01~'13.06.30	미래에셋증권	위탁거래	유동자산	41,362,275,947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의 거래>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리할 것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선정방법 등

	-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펀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펀드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펀드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상장지수펀드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 투자자총회, 집합투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를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능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 입니다.
위험평가액	법 시행규칙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왑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등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시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 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